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한동의원 대표발의)**

의안 번호	25-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.

발 의 자 : 이한동, 권영숙, 권인순,
김승수, 안미자, 이상원,
홍지광

1. 개정이유

시보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일부 신분상의 제한이 있을 뿐, 엄연히 공무원임에도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별의 소지가 존재함.

이에 조례 적용범위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 조문을 삭제하고, 실제 직무수행 상태라 볼 수 없는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적용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인 장애인공무원을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호)

3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8조 및 제77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 5. 19. ~ 5. 26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마포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</u>	2. <u>정직 ·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

3. 미첨부 사유

개정안은 기존보다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, 추가
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김석빈
연 락 처	02-3153-8216

【관 계 법 령】

지 방 공 무 원 법

[시행 2024. 12. 31.] [법률 제20621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제28조(시보임용) ① 5급 공무원(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, 6급 이하 공무원(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, 그 기간의 근무성적·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휴직 기간,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
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·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